

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8. 12.
제출자 : 이천시장

□ 제안이유

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시·도 공통 전의 사항을 수용하여 시·군·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등 조례중 도출된 일부 불합리한 사항(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)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시 관서당경비 비목 축소에 따라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조항을 삭제함(안 제10조).
- 나.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중 동일 시·군·구에 소요되는 단위 당 물품취득가격이 10백만원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5백만원이상 10백만 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음(안 제 17조).

이천시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이천시물품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3항제2호중 "10백만원미만인 경우"를 "5백만원이상 10백만원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"으로 한다.

부 록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 (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) ①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 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 는 물품매입(수리·제조) 품의 요구서에 물품 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. ③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, 물품분류번호, 수량,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 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 재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 <삭 제></p>
<p>제17조 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~ ②(생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동일 광역시·도(시·군·자치구 포함)와 정 부 각부처, 타 특별시·도에 소요조회는 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 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 2. 동일 광역시·도(시·군·자치구 포함) 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 가격기준)이 10백만원미만인 경우</p>	<p>제17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~ 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 1.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--- 물품취득가격(장부 가격기준)이 5백만원이상 10백만원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</p>